



제 429회 국회 (정기회)
제1차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규제자유특구 및 지역특화발전특구에 관한 규제특례법 일부개정법률안

검 토 보 고

〈규제자유특구 지정신청 내용에 대한
보완 요구 규정 신설 등〉

■ 권향엽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제2209695호)

2025. 9.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전 문 위 원 성 소 미

목 차

I. 제안경위	1
II.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1
III. 검토의견	2
1. 규제자유특구 지정신청 내용에 대한 보완 요구 규정 신설	2
2. 규제자유특구계획의 수립지침 작성 및 배포 규정 신설	4
3. 규제자유특구 지정신청의 반려 및 통보 규정 신설	9

I. 제안경위

1. 발 의 자 : 권향엽의원 등 10인
2. 발의연월일 : 2025. 4. 10.
3. 회부연월일 : 2025. 4 .11.

II.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에 따르면 규제자유특구는 혁신사업 또는 전략산업을 육성하기 위하여 규제특례등이 적용되는 구역으로서,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지정을 신청하고 중소벤처기업부장관이 규제자유특구위원회의 심의·의결 등을 거쳐 지정할 수 있음.

그런데 지정신청을 반려하는 경우 명확한 반려 사유가 제시되지 않는 등 신청한 지방자치단체와의 소통이 부족하다는 지적이 있으며, 규제자유특구계획 수립에 대한 안내·지침을 마련하는 등 지정 절차의 보완이 필요하다는 의견이 제시됨.

이에 규제자유특구계획의 검토 기준 등을 담은 규제자유특구계획 수립 지침을 배포할 수 있도록 하고, 규제자유특구 지정신청을 반려하는 경우 그 사유를 통보하도록 함으로써 규제자유특구 지정 절차의 원활한 운영을 도모하려는 것임(안 제74조제3항 및 제75조제5항 신설 등).

Ⅲ. 검토의견

1. 규제자유특구 지정신청 내용에 대한 보완 요구 규정 신설 (안 제72조제4항 신설).

개정안은 중소벤처기업부장관이 규제자유특구 지정신청 내용에 보완이 필요하다고 인정되면 상당한 기간을 정하여 보완을 요구할 수 있도록 하려는 것임(안 제72조제4항 신설).

현행	개정안
제72조(규제자유특구 지정신청) ① ~ ③ (생략) <u><신설></u> ④ 제1항부터 제3항까지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규제자유특구 지정신청의 구체적인 내용, 절차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72조(규제자유특구 지정신청) ① ~ ③ (현행과 같음) ④ <u>중소벤처기업부장관은 규제자유특구 지정신청 내용에 보완이 필요하다고 인정되면 상당한 기간을 정하여 보완을 요구할 수 있다.</u> ⑤ -----제4항----- ----- ----- -----.

현행법 제72조¹⁾는 규제자유특구를 지정받으려는 비수도권 시·도지사등은 규제자유특구계획을 수립하여 중소벤처기업부장관에게 신청하도록 규정하고 있고, 현행법 제75조²⁾는 중소벤처기업부장관이 규제자

1) 「규제자유특구 및 지역특화발전특구에 관한 규제특례법」

제72조(규제자유특구 지정신청) ① 규제자유특구를 지정받으려는 자로서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자(이하 “비수도권 시·도지사등”이라 한다)는 제74조에 따라 규제자유특구계획을 수립하여 중소벤처기업부장관에게 규제자유특구 지정을 신청하여야 한다.

유평구의 지정신청을 받은 경우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과 지방시대 위원장의 의견을 고려하여 규제자유특구위원회의 심의·의결을 거쳐 규제자유특구계획을 승인하고 규제자유특구를 지정하도록 규정하고 있으며, 현행법 시행령 제40조제3항³⁾은 중소벤처기업부장관이 규제자유특구 지정신청 내용에 보완이 필요하다고 인정되면 상당한 기간을 정하여 보완을 요구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음.

현행법 제75조제2항⁴⁾은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과 지방시대위원장이 해당 규제자유특구계획의 타당성 및 필요성 등을 검토하기 위하여 이를 신청한 비수도권 시·도지사등에게 자료 보완을 요구한 경우 관련 자료 보완에 걸린 기간은 검토결과의 회신기간(30일)에 산입하지

2) 「규제자유특구 및 지역특화발전특구에 관한 규제특례법」

제75조(규제자유특구의 지정 등) ① 중소벤처기업부장관은 제72조제1항에 따라 규제자유특구의 지정신청을 받은 경우 그 내용을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과 「지방자치분권 및 지역균형발전에 관한 특별법」 제62조에 따른 지방시대위원회 위원장(이하 “지방시대위원장”이라 한다)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②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과 지방시대위원장은 제1항에 따른 통보를 받은 경우 해당 규제자유특구계획의 타당성 및 필요성 등을 검토하여 그 결과를 30일 이내에 중소벤처기업부장관에게 문서로 회신하여야 한다. 다만,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과 지방시대위원장이 해당 규제자유특구계획의 타당성 및 필요성 등을 검토하기 위하여 이를 신청한 비수도권 시·도지사등에게 자료 보완을 요구한 경우 관련 자료 보완에 걸린 기간은 해당 기간에 산입하지 아니한다.

③ 중소벤처기업부장관은 제2항에 따른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과 지방시대위원장의 의견을 고려하여 규제자유특구위원회의 심의·의결을 거쳐 규제자유특구계획을 승인하고 규제자유특구를 지정한다.

3) 「규제자유특구 및 지역특화발전특구에 관한 규제특례법 시행령」

제40조(규제자유특구 지정신청 등) ③ 중소벤처기업부장관은 규제자유특구 지정신청 내용에 보완이 필요하다고 인정되면 상당한 기간을 정하여 보완을 요구할 수 있다.

4) 「규제자유특구 및 지역특화발전특구에 관한 규제특례법」

제75조(규제자유특구의 지정 등) ②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과 지방시대위원장은 제1항에 따른 통보를 받은 경우 해당 규제자유특구계획의 타당성 및 필요성 등을 검토하여 그 결과를 30일 이내에 중소벤처기업부장관에게 문서로 회신하여야 한다. 다만,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과 지방시대위원장이 해당 규제자유특구계획의 타당성 및 필요성 등을 검토하기 위하여 이를 신청한 비수도권 시·도지사등에게 자료 보완을 요구한 경우 관련 자료 보완에 걸린 기간은 해당 기간에 산입하지 아니한다.

아니하도록 하는 등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과 지방시대위원장의 자료 보완 요구 규정을 두고 있는바, 중소벤처기업부장관이 규제자유특구 지정신청 내용에 보완을 요구할 수 있는 근거를 직접 법률에 규정하려는 개정안에 별다른 문제는 없는 것으로 보임.

중소벤처기업부는 시행령에서 규정하고 있는 규제자유특구계획에 대한 보완 요구 근거 조항을 법률로 상향함으로써, 지정신청과 관련한 일련의 절차에 대해 지방자치단체의 이해도를 제고한다는 측면에서 개정안에 동의한다는 입장임.

2. 규제자유특구계획의 수립지침 작성 및 배포 규정 신설(안 제74조제3항 신설)

개정안은 중소벤처기업부장관이 규제자유특구계획의 수립지침을 작성하여 배포할 수 있도록 하려는 것임(안 제74조제3항 신설).

현행	개정안
제74조(규제자유특구계획의 수립) ①. ② (생략) <u><신설></u>	제74조(규제자유특구계획의 수립) ①. ② (현행과 같음) ③ <u>중소벤처기업부장관은 규제자유특구계획의 수립에 관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포함한 지침을 작성하여 배포할 수 있다.</u>

	1. <u>규제자유특구계획의 타당성 및 필요성 검토를 위한 세부기준</u> 2. <u>규제자유특구계획의 수립 및 공고 등 절차에 관한 사항</u> 3. <u>그 밖에 규제자유특구계획의 수립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u>
--	---

현행법 제74조5)는 비수도권 시·도지사등이 규제자유특구 지정을 신청하려는 경우 규제자유특구계획을 수립하도록 규정하고 있고, 규제자유특구계획에 포함되어야 할 내용으로 규제자유특구의 명칭·위치·면적, 지정 필요성 및 기대효과, 혁신사업 또는 전략산업의 필요성과 육성방안, 규제자유특구사업자, 규제특례와 그 필요성 및 적용 범위, 규제특례의 신속확인·실증을 위한 특례·임시허가에 관한 사항과 그 필요성 및 적용 범위, 규제특례등이 적용되는 공간적 범위, 시·도 지방시대 계획

5) 「규제자유특구 및 지역특화발전특구에 관한 규제특례법」

제74조(규제자유특구계획의 수립) ① 비수도권 시·도지사등이 규제자유특구 지정을 신청하려는 경우 다음 각 호의 내용이 포함된 규제자유특구계획을 수립하여야 한다.

1. 규제자유특구의 명칭·위치·면적
 2. 규제자유특구 지정 필요성 및 기대 효과
 3. 혁신사업 또는 전략산업의 필요성과 육성방안
 4. 혁신사업 또는 전략산업등에 참여하여 규제특례등의 적용을 받을 수 있는 규제자유특구사업자
 5. 규제자유특구에 적용되는 규제특례와 그 필요성 및 적용 범위
 6. 제3장제2절에 따른 ‘규제의 신속확인’, ‘실증을 위한 특례’, ‘임시허가’에 관한 사항과 그 필요성 및 적용 범위
 7. 제5호 및 제6호의 규제특례등이 적용되는 공간적 범위
 8. 「지방자치분권 및 지역균형발전에 관한 특별법」 제7조의 시·도 지방시대 계획과의 연계에 관한 사항
 9. 규제자유특구 및 인근지역의 부동산가격 안정방안
 10. 그 밖에 규제자유특구의 지정 신청 등에 필요한 사항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
- ② 비수도권 시·도지사등은 제1항에 따라 수립한 규제자유특구계획을 30일 이상 공고하고 주민, 기업, 「지방자치분권 및 지역균형발전에 관한 특별법」 제67조제1항에 따른 시·도 지방시대위원회(비수도권 시장·군수·구청장이 규제자유특구계획을 수립한 경우 같은 조 제3항에 따른 시·군·구 지방시대위원회를 말한다) 등의 의견을 들어야 한다.

획과의 연계에 관한 사항, 규제자유특구 및 인근지역의 부동산가격 안정방안 등을 규정하고 있으며, 비수도권 시·도지사등은 수립한 규제자유특구계획을 30일 이상 공고하고 주민, 기업, 시·도 지방시대위원회 등의 의견을 듣도록 규정하고 있음.

현행법 시행령 제42조제4항⁶⁾은 중소벤처기업부장관이 비수도권 시·도지사등이 규제자유특구계획을 수립하는 데 필요한 지원을 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고, 중소벤처기업부고시인 「규제자유특구 운영요령」 제8조는 중소벤처기업부장관이 시·도별 특구계획의 체계적이고 전문적인 수립을 지원하기 위하여 실무지원단을 지정할 수 있도록 하고 있으며, 같은 고시 제10조는 중소벤처기업부장관이 특구계획에 대한 사전컨설팅을 수행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음⁷⁾.

개정안은 규제자유특구계획 수립지침에 규제자유특구계획의 타당성 및 필요성 검토를 위한 세부 기준, 규제자유특구계획의 수립 및 공고

6) 「규제자유특구 및 지역특화발전특구에 관한 규제특례법 시행령」

제42조(규제자유특구계획의 수립 등) ④ 중소벤처기업부장관은 비수도권 시·도지사등이 규제자유특구계획을 수립하는 데 필요한 지원을 할 수 있다.

7) 「규제자유특구 운영요령」

제8조(실무지원단) ① 중소벤처기업부 장관은 비수도권 시·도별 특구계획의 체계적이고 전문적인 수립을 지원하기 위하여 실무지원단을 지정할 수 있다.

③ 실무지원단은 시도별 특구계획 수립과 특구의 지정, 운영과 관련하여 다음 각호와 관련된 업무를 지원한다.

1. 시행령 제42조 제4항에 따른 비수도권 시·도지사가 특구계획을 수립하는 데 필요한 지원에 관한 업무

제10조(사전컨설팅 및 관계부처 사전협의) ① 중소벤처기업부 장관은 효율적인 특구계획의 수립을 위하여 제9조의 특구계획에 대해 사전컨설팅 및 관계부처 사전협의를 수행할 수 있다.

② 특구지정 신청을 희망하는 비수도권 시·도지사는 특구계획 공고 및 의견청취 절차에 앞서 제1항의 사전컨설팅 및 관계부처 사전협의에 참여할 수 있다.

③ 중소벤처기업부 장관은 사전컨설팅 및 관계부처 사전협의 결과를 바탕으로 비수도권 시·도지사로 하여금 특구계획을 수정·보완하도록 할 수 있다.

등 절차에 관한 사항 등을 포함하도록 하고 있는데, 이러한 지침이 배포되면 비수도권 시·도지사 등이 규제자유특구계획을 수립할 때 준수해야 할 내용과 절차를 보다 쉽게 이해하고 효율적으로 규제자유특구계획을 수립할 수 있도록 지원하는 효과가 있을 것으로 생각됨.

먼저, 안 제74조제3항제1호는 규제자유특구계획의 타당성 및 필요성 검토를 위한 세부기준을 지침에 포함하도록 규정하고 있는데, 현행법 제74조제1항은 규제자유특구계획에 포함되어야 할 내용으로 규제자유특구의 지정 필요성 및 기대효과, 혁신사업 또는 전략산업의 필요성과 육성방안, 규제자유특구사업자, 규제특례와 그 필요성 및 적용 범위, 규제의 신속확인·실증을 위한 특례·임시허가에 관한 사항과 그 필요성 및 적용 범위 등의 내용을 포함하도록 하고 있어, 규제자유특구 지정 신청자로 하여금 해당구역을 왜 규제자유특구로 지정하여 혁신사업 및 전략사업을 육성하고 규제특례 등을 부여해야 하는지 그 필요성을 소명하고, 어떠한 효과가 기대되는지, 육성 방안은 어떠한 것인지 등을 설명하도록 요구하고 있으므로, 개정안에 따라 지침이 배포될 경우, 비수도권 시·도지사등이 규제자유특구계획을 수립할 때 어떻게 해야 타당성 및 필요성을 인정받을 수 있을지에 대한 가이드라인이 될 것으로 생각됨.

다음으로, 안 제74조제3항제2호는 규제자유특구계획의 수립 및 공고 등 절차에 관한 사항을 지침에 포함하도록 규정하고 있는데, 현행법

제74조제2항은 비수도권 시·도지사등이 수립한 규제자유특구계획을 30일 이상 공고하도록 하고, 주민, 기업, 시·도 지방시대위원회(비수도권 시장·군수·구청장이 규제자유특구계획을 수립한 경우 시·군·구 지방시대위원회) 등의 의견을 듣도록 하는 등 절차적 사항을 규정하고 있으므로, 개정안에 따라 지침이 배포되면 어떠한 절차를 준수하여 규제자유특구 지정을 신청해야 하는지 비수도권 시·도지사등이 명확하게 알 수 있도록 하는 효과가 있을 것임.

중소벤처기업부는 지방자치단체의 특구계획 수립을 지원하기 위한 지침을 마련하는 것에 동의한다는 입장임. 다만, 안 제74조제3항제1호 중 규제자유특구계획의 “타당성 및 필요성”은 현행법 제75조제2항8)의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과 지방시대위원장이 행하는 절차로 오인될 소지가 있으므로 “적절성”으로 수정할 필요가 있다는 의견과, 제74조제3항제2호 중 “공고”는 단순한 행정절차이므로 관련된 구체적 안내를 위해 “특구지정”으로 수정할 필요가 있다는 의견을 제시하였음.

8) 「규제자유특구 및 지역특화발전특구에 관한 규제특례법」

제75조(규제자유특구의 지정 등) ① 중소벤처기업부장관은 제72조제1항에 따라 규제자유특구의 지정신청을 받은 경우 그 내용을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과 「지방자치분권 및 지역균형발전에 관한 특별법」 제62조에 따른 지방시대위원회 위원장(이하 “지방시대위원장”이라 한다)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②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과 지방시대위원장은 제1항에 따른 통보를 받은 경우 해당 규제자유특구계획의 타당성 및 필요성 등을 검토하여 그 결과를 30일 이내에 중소벤처기업부장관에게 문서로 회신하여야 한다.

3. 규제자유특구 지정신청의 반려 및 통보 규정 신설(안 제75조제5항 신설).

개정안은 규제자유특구 지정신청 내용에 대한 중소벤처기업부장관의 보완요구에 응하지 아니하거나, 규제자유특구 지정신청에 필요한 절차를 이행하지 아니하거나, 신청한 비수도권 시·도지사등이 신청을 철회한 경우에, 중소벤처기업부장관이 규제자유특구의 지정신청을 반려할 수 있도록 하고, 반려의 취지를 신청한 비수도권 시·도지사등과 민간기업등에게 통보하도록 하려는 것임(안 제75조제5항 신설)

현행	개정안
제75조(규제자유특구의 지정 등) ① ~ ④ (생략) <u><신설></u>	제75조(규제자유특구의 지정 등) ① ~ ④ (현행과 같음) <u>⑤ 중소벤처기업부장관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규제자유특구의 지정신청을 반려할 수 있다. 이 경우 반려의 취지를 신청한 비수도권 시·도지사등과 민간기업등에게 통보하여야 한다.</u> <u>1. 제72조제4항에 따른 보완요구에 응하지 아니한 경우</u> <u>2. 이 법에 따른 규제자유특구 지정 신청 등에 필요한 서류를 제출하지 아니하거나 필요한 절차를 이행하지 아니한 경우</u> <u>3. 신청한 비수도권 시·도지사등이 신청을 철회한 경우</u>

⑤ 제1항부터 제4항까지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규제자유특구의 지정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⑥ -----제5항----- ----- ----- ---
---	--

현행 시행령 제44조제2항9)은 비수도권 시·도지사등이 규제자유특구의 지정을 신청할 때 제출해야 할 서류를 제출하지 않거나, 중소벤처기업부장관의 보완요구에 응하지 않거나, 규제자유특구계획의 공고, 주민, 기업, 지방시대위원회의 의견청취 등 필요한 절차를 이행하지 않은 경우 중소벤처기업부장관이 규제자유특구 지정신청을 반려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음.

개정안에 따라 중소벤처기업부장관이 규제자유특구의 지정신청을 반려할 수 있는 경우가 법률에 규정되고 반려 취지의 통보가 이루어지면, 지정을 신청한 비수도권 시·도지사등의 입장에서 어떠한 경우에 규제자유특구 지정신청이 반려될 수 있는지를 사전에 인지할 수 있고, 사후적으로는 규제자유특구 지정신청이 반려된 이유를 파악하여 향후 다시 지정을 신청할지를 결정하는 경우에 참고할 수 있는 효과가 있

9) 「규제자유특구 및 지역특화발전특구에 관한 규제특례법 시행령」

제44조(규제자유특구의 지정 등) ② 중소벤처기업부장관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규제자유특구의 지정신청을 반려할 수 있다.

1. 제40조제1항 각 호의 서류를 제출하지 않거나 같은 조 제3항에 따른 보완요구에 응하지 않는 경우
2. 법 제74조제2항, 이 영 제42조제1항 및 제43조에 따른 규제자유특구 지정신청 등에 필요한 절차를 이행하지 않은 경우

을 것으로 보임.

다만, 안 제72조제5항제3호는 중소벤처기업부장관이 규제자유특구의 지정신청을 반려할 수 있는 경우로, 신청한 비수도권 시·도지사등이 신청을 철회한 경우를 규정하고 있는데, 비수도권 시·도지사등이 규제자유특구의 지정신청을 철회한 경우에는 반려할 대상인 신청이 더 이상 존재하지 않으므로, 규정할 필요성이 없어 보임.

중소벤처기업부는 현재 규제자유특구 지정신청 시 제출해야 하는 서류 및 법정 이행 절차 등은 현행 시행령의 여러 조문에 규정되어 있는데, 개정안에 따르면 법 조문의 명료화 및 구체화를 위해 법률에서 시행령의 각 조문을 인용해야 하므로 법 체계상 위계가 어긋날 우려가 있다는 의견을 제시함.

문 의 처
02) 6788-5467